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

일 시 | 2024. 9. 27.(금) 10: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 최 | 국회의원 강선우 서영석 초록우산

후 원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

초록우산

초록우산

CONTENTS

개회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02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03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 04

주제발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 07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종합토론

좌장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토론

강수진 가족돌봄청년 ····· 37

이성은 인천가현중학교 교육복지사 ····· 41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45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49

안정습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 ····· 53

장영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장 ····· 57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

개회사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시작에 앞서,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서영석 의원님과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정소연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던 한 청년이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어린 나이에 가족 돌봄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그리고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시기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법적 근거로 인해 지원은커녕,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 번 시작된 가족돌봄은 끝이 날 때까지 손을 놓을 수 없는 생애 전반의 문제이지만, 현재의 정책은 대체로 청년기에 집중되어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현실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아동,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자들이 가족돌봄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식과 감수성을 높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아이들이 가족돌봄의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가족돌봄아동과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논의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국회의원‘국민비타민’서영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에 함께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공동 주최해주신 강선우 의원님과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님, 토론 및 발제를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저출생 문제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돌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극심한 생활고 속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8월부터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조례마다 연령이 상이하며,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조례가 없고 지원을 13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했습니다. 이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13세 이하의 아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돌봄 현장에서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조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개념이 분명치 않아, 신속한 발굴과 기민한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법이 제정된다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립되면서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돌봄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은 자신의 삶은 돌볼 여유조차 없이 돌봄 노동을 오롯이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선 속에 자신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돌봄의 고된 노동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인 만큼 가족돌봄아동과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모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꿈을 꾸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개회사

황영기 회장
초록우산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회장 황영기입니다.

오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언제나 아동을 위한 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면서 이번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힘써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님, 서영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정소연 교수님을 비롯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고견을 들려주실 모든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가가 먼저 찾아와주고, 들어주고,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찾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정을 촉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질병, 장애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며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보호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화답해 주시어 열린, 오늘 국회 토론회 자리가 무척 뜻깊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족돌봄은 아동기에서 청년에 이르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시기를 놓친 뒤 지원하는 것은 늦습니다.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 가족돌봄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간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여러 주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전담지원 시범사업', '일상돌봄서비스'는 연령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그마저도 지역마다 지원 내용과 예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기반을 만들고, 이들을 사회안전망에 포함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준과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도 있는 입법 논의와 정부 지원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강선우 간사님,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초록우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족돌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우산

주제발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초록우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YC)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2024. 9. 27. (금). 국회토론회 발표자료.

정소연 (책임연구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홍란 (공동연구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아래미 (공동연구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차

I. 연구 개요: 연구목적 및 연구과정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III. 양적연구의 주요 결과
IV. 질적연구의 주요 결과
V.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지원을 위한 추진 과제

Ⅰ. 연구 개요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YC와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 돌봄역할 수행, 학교생활, 신체적·정신적 건강,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고,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YC 발굴 노력 및 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며, YC의 발달적 특성에 기초한 유형화 및 잠재적 보호요인을 탐색함으로써 효과적인 YC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풍부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YC와 이들의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YC들이 아동·청소년으로서 기본 권리를 누리며 생활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장 먼저 표출되어 관련 연구 및 지원 정책 차원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경우 가족돌봄아동을 young carer로 지칭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초점 연령대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또는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 '아동'이 제외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본문에서는 지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족돌봄'이라는 용어의 불필요한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young carer를 의미하는 YC를 '가족돌봄아동·청소년'과 병행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2. 연구방법 및 진행 과정 개요

- 혼합연구 방법(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순차적 배치) 활용

- 양적연구
  -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186명 참여)
  - 설문조사 참여 YC의 사례관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168명 참여)

- 질적연구
  -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대상 심층인터뷰(12명 참여)
  -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인터뷰(FGI)
    - 공공영역(구청, 주민센터 등/ 6명 참여)
    - 교육영역(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4명 참여)
    - 민간영역(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실/ 6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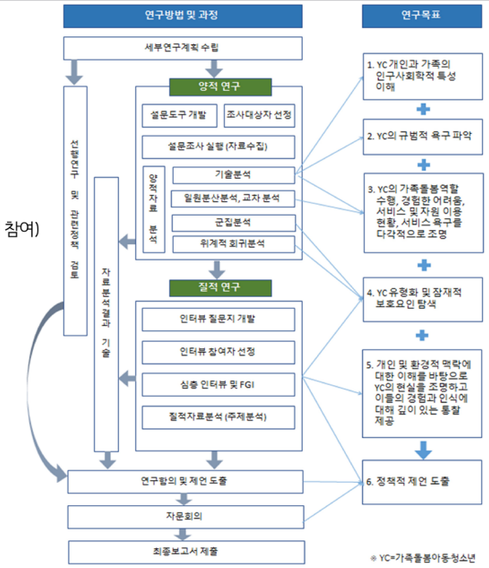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young carer)의 개념

- YC는 일반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을 가리키나, 지역자치단체의 조례 등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가족원 특성, 아동의 연령 등의 기준이 상이할 정도로 이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부재함

〈표 2-1〉 YC 연령

구분	대상	연령
영국 Children and Family Act	아동·청소년	18세 미만
호주 Carer Recognition Act	청소년·청년	25세 미만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청년	13세 ~ 34세
서울특별시	청년	9세 ~ 34세
대구광역시	청소년·청년	9세 ~ 34세
인천광역시	청소년·청년	9세 ~ 34세
광주광역시	청소년·청년	(청소년) 9세 ~ 24세, (청년) 19 ~ 34세
대전광역시	아동	18세 미만
울산광역시	청소년·청년	9세 ~ 39세
경기도	청소년 및 청년	34세 이하의 사람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14세 ~ 39세
충청남도	청소년 및 청년	9세 ~ 39세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청년	13세 ~ 39세
경상남도	청소년·청년	13세 ~ 39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13세 ~ 39세

〈표 2-2〉 돌봄 대상인 가족원의 특성에 대한 규정

구분	고령	질병	장애	사고	약물	알코올 남용	정신 이상	부모 부재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	○	○				
서울특별시		○	○					
대구광역시	○	○	○					
인천광역시	○	○	○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	○	○					
경기도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			
충청남도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경상남도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출처: 영국, 호주 관련 법, 함선유 외(2022)의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광역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인구현황

- 주요 유럽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YC는 대체로 아동 인구의 5~8% 수준으로 추정됨
- Lam과 Lam (2024)은 체계적 문헌 검토를 통해 아동인구에서 YC의 비율이 1.1~12.0%라고 밝힌 바 있음
- 2022년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13~18세 YC는 2.4%였으나, 비확률표집이라는 점에서 자료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큼

〈표〉 YC 인구 (추정) 현황

국가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일본	미국	뉴질랜드	한국
조사연령	11~18세	14~16세	15~24세	13~17세	10~22세	15세, 17세	18세 미만	15~24세	13~18세
해당 연령 인구대비 비율 (또는 인구 수)	8%	7%	7.2%	6%	6.1%	4.1~5.7%	540만명	8%	2.4%

※ 통계수치의 출처인 선행연구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 제시됨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가족돌봄아동 인구 현황 자료의 출처]

-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Leu, A. et al., (2022). "The 2021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of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6(5), 619-636.*
- 독일: Metzing, S. et al. (2020). The prevalence of young carers – a standardized survey amongst school students (KiFam-study). Caring Sciences. 34(2), 501-513.
- 일본: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survey. (2024). The conditions of young carers. https://www.nippon.com/en/japan-data/h00997/
- 미국: AARP and National Alliance for Caregiving. (2020). Caregiving in the U.S. 2020. https://doi.org/https://doi.org/10.26419/ppi.00103.001
- 뉴질랜드: International Alliance of Carer Organization (2021). *Global State of Caring-New Zealand.*
- 한국: 함선유 외. (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Lam, L. T., & Lam, M. K. (2024). The prevalence of cargiving among young people.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1(5), 621-622.

3. 가족돌봄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선행연구 검토 결과, 가족돌봄은 보호자와의 애착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아동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음
- 가족돌봄이 아동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은 역량, 건강, 사회적 관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역량:**
  - 가족돌봄아동은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편으로, 결석율과 학업중단의 위험은 높고 학업성취도는 낮은 경향이 있음
  - 학업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립역량과 취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보건복지부(2022) 실태조사 결과, 가족돌봄청(소)년의 36.7%가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함
- **건강:**
  -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지 않을 시 아동의 성장이 저해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 정신건강 어려움, 높은 우울감,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사회적 관계:**
  - 가족돌봄으로 인해 또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 하거나, 관계가 악화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음

4.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 국제비교

- YC를 위한 외국의 정책 및 지원은 1992년 영국에서 가족돌봄이 이슈화된 이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
- Leu et al.(2017; 2022)는 YC에 대한 대응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들을 분류함
  - 1수준 국가: 없음
  - 2수준 국가: 영국이 유일
  - 한국은 2017년에 이어 2021년 연구에서도 7수준(무대응)의 국가로 분류됨

〈표 2-4〉 가족돌봄아동(영케어러)에 대한 국가별 대응 수준

대응 수준	인식 상황	연구 기반	법적 근거	정책/서비스 대응	해당국가
Level 1 (통합 incorporated, 지속가능 sustainable)	모든 사회구성원	충분	별도 법령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 서비스 제공	없음
Level 2 (선진, advanced)	대중, 전문가, 정책결정자	확대 중	중앙정부 법령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수립	영국
Level 3 (중급, intermediate)	대중, 전문가, 정책결정자	형성 중	지역 단위 법령	지역 단위 서비스 제공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Level 4 (초급, preliminary)	일부 대중, 전문가	마련 중	관련 법령	드물게 존재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Level 5 (준비, emerging)	대중, 전문가가 인식하기 시작	마련 중	관련 법령	정부대응 없음 관련 서비스 이용가능	벨기에,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미국
Level 6 (각성, awakening)	취약 아동청소년의 하위집단으로 인식 시작	-	-	-	방글라데시*, 그리스, 인도*, 일본*, 네팔*, 폴란드,*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Level 7 (무대응, no response)	-	-	-	-	그 밖의 국가들

출처: Leu et al. (2022)를 참고하여 재구성
주: * 표시된 국가는 2017년에 비해 수준이 상승된 국가임

5.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에 대한 외국의 정책 및 지원 사례

구분	영국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대응 수준	가장 적극 대응(1993~), 2수준	3수준	3수준	3수준
법적 근거	Children and Family Act 2014 (YC 개념), Care Act 2014 (지원 내용)	Carers Recognition Act 2010, 지역단위 법령 존재	관련 법은 지역단위로 존재, 중앙단위 법은 부존재	관련 법은 지역단위로 존재, 중앙단위 법은 부존재
대상	18세 미만 아동	12~25세	18세 미만, 최근 25세 미만 변경	18세 미만 아동
정부 역할 및 지원 내용	• 보건사회복지부는 관련 계획 수립및 배포하고, 지방정부는 영케어러 현황 및 욕구사정,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함 • 16세 이상이 35시간 이상 돌봄서비스제공 시 간병인 수당 지급. 전일제 학생이 아니고 소득이 151파운드(약 26만 8천 원)보다 적으면 주급 80파운드(약 14만 2천 원) 지급	• 16~24세 미만 아동에게는 청소년 수당 지급. 18세 미만 2주당 AUD 395.3(36만 9천 원), 18세 이상 AUD 455.2(42만 4천 원), 12~25세는 학비 보조금 지급 가능 (AUD 3,000(약 280만원) • CarersACT, Carer Gateway를 통해 정보 제공	• 2021~2025년 National Carers Strategy를 최초로 수립하고, 돌봄제공자 지원 내에 영케어러 포함하여 지원 중 • 돌봄자들의 기여 인정, 학습/개인생활/돌봄의 균형 지원 • 가족돌봄아동 수당은 없고, 다른 보편적인 수당을 통해 소득 지원 가능, 학교와 협력하여 학습과 가족돌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 맞춤형 지원 제공	• National Carers Strategy를 수립하고, 돌봄제공자 지원 내에 영케어러 포함하여 지원 중 • 돌봄제공자에 대한 인식 개선, 통합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휴식, 상담, 교육) 제공, 지역의 Swedish Family Care Competence Centre(Nka)를 통해 영케어러 발굴 및 지원 • 가족돌봄아동 수당은 없으나, 아동수당과 돌봄수당을 통해 소득 지원 가능, 학교와 협력하여 학습과 가족돌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 맞춤형 지원 제공
민간 지원	비영리기관이 관련 서비스 제공. 대표기관은 Cares Trust 이며,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음	비영리기관이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6.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에 대한 외국의 정책 및 지원 사례: 요약

- Leu et al.(2022)이 분류한 2, 3수준의 국가인 영국,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의 가족돌봄아동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가족돌봄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기존의 아동가족법이나 간병인법에 가족돌봄아동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하고 있으며, 역할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영국이나 호주는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제도가 있는 반면,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기존의 제도를 가족돌봄아동이 이용할 수 있게 대상범위에 가족돌봄아동을 포함시키고 이들에게 제도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네 나라 모두 학교를 통해 학습과 가족돌봄, 개인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
  - 가족돌봄아동이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7.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에 대한 한국의 정책 및 지원

- 법률과 조례
  - 중앙정부 차원의 YC 관련 법 부재
  - 67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YC 조례 제정(2024년 6월 기준)
  - 조례 주요 내용: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민간 전문가 활용,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중복지원의 제한
-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YC 관련 중장기계획은 부재하나, 2022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최초로 발표
  - 지원내용: 가족돌봄청년 개념 정의, 발굴 및 조사, 지원, 관리, 제도화, 인식 등
- 현재 한국의 YC관련 주된 서비스는 다음의 2가지임
  - 일상돌봄서비스: 2023년 도입,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서비스)와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2024년 신규 도입,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발굴사례관리, 자기돌봄비, 일상돌봄서비스 연계 등 실시

Ⅲ. 양적 연구의 주요 결과

1. YC의 가족돌봄역할 수행: 본 조사 표본과 유럽 2개국의 조사 표본 비교

구분	본조사 표본 (n=186)	A연구 표본(영국)		B연구 표본(스위스)	
		YC (n=177)	非YC (n=488)	YC (n=307)	非YC (n=3,684)
가사	4.27 (1.40)	3.82 (1.38)	3.31 (1.43)	3.19 (1.26)	3.04 (1.30)
가정관리	4.41 (1.35)	2.58 (1.36)	1.93 (1.33)	2.60 (1.26)	2.23 (1.26)
경제·실제적 지원	1.49 (1.47)	0.51 (0.95)	0.23 (0.61)	0.83 (1.10)	0.70 (1.07)
수발(personal care)	1.37 (1.69)	0.68 (1.30)	0.24 (0.77)	0.93 (1.37)	0.60 (1.14)
정서적 지원	3.46 (1.79)	2.56 (1.49)	1.53 (1.49)	3.51 (1.68)	2.78 (1.76)
형제자매돌봄	1.93 (2.10)	1.80 (1.67)	1.18 (1.45)	1.64 (1.73)	1.45 (1.68)
전체 합산값	16.92 (6.35)	11.82 (5.24)	8.41 (4.55)	12.51 (5.11)	10.69 (5.06)

A연구: Joseph, S., Kendall, C., Toher, D., Sempik, J., Holland, J., & Becker, S. (2019). Young carers in England: Findings from the 2018 BBC survey on the prevalence and nature of caring among young people.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5*(4), 606-612.

B연구: Leu, A., Frech, M., Wepf, H., Sempik, J., Joseph, S., Helbling, L., Moser, U., Becker, S., & Jung, C. (2019). Counting young carers in Switzerland: A study of prevalence. *Children & Society, 33*, 53-67.

- MACA-18YC 척도로 측정한 본 조사표본의 가족돌봄역할 수행은 16.92점으로 '매우 높음(17점 이상)'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한 수준임
- 반면 영국(11.82)과 스위스(12.51)의 YC 표본에서 해당 점수는 모두 '보통'으로 분류되어 대조를 이룸
- 이러한 격차는 가족돌봄의 6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남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2. YC의 가족돌봄역할 수행: 본 조사 표본과 유럽6개국의 조사 표본 비교

- 유럽 6개국에서 YC의 가족돌봄역할 수행의 평균은 12.57(sd=5.64)이었고, 일반청소년(非YC)의 평균은 8.81(sd=4.57)로서, 16.92(sd=6.35)인 본 조사표본과 매우 큰 격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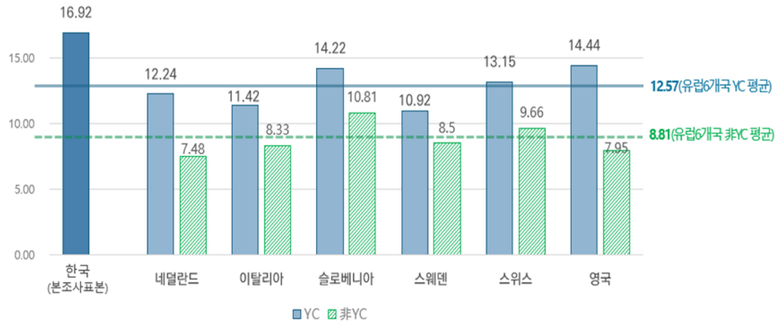

- 자료출처(본 조사 표본 제외): Lewis, F. M., Becker, S., Parkhouse, T., Joseph, S., Hlebec, V., Mrzel, M., Brolin, R., Casu, G., Boccaletti, L., Santini, S., D'Amen, B., Socci, M., Hoefman, R., de Jong, N., Leu, A., Phelps, D., Guggiari, E., Magnusson, L., & Hanson, E. (2023). The first cross-national study of adolescent young carers aged 15-17 in six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 and Caring, 7*(1), 6-32.

3. YC 연령대별 가족돌봄역할 수행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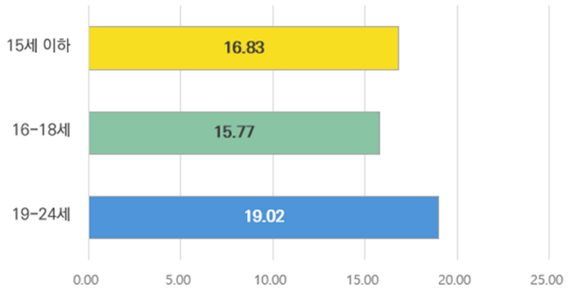

구분	전체 (n=186)	A1 (15세 이하, n=70)	A2 (16-18세, n=73)	A3 (19-24세, n=43)	ANOVA 분석 결과 (Turkey HSD)
전체 합산	16.92 (6.35)	16.83	15.77	19.02	F(2,183)=3.672, p=.027 A2 < A3*

* p< .05, **p< .01, ***p< .001

-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15세 이하 YC(A1)의 가족돌봄역할 수행은 16.83, 16-18세 YC(A2)는 15.77, 19-24세 YC(A3)는 19.02로 확인됨
- 16-18세 집단(A2)은 19-24세 집단(A3)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15세 이하의 집단(A1)은 다른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15세 이하의 어린 YC(A1)의 가족돌봄부담이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4. 가족돌봄아동 또는 가족돌봄청소년(YC)이라는 자기인식

- 본 조사에 참여한 YC에게 스스로 가족돌봄아동 또는 가족돌봄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과반이 '아니다' 혹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등 YC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모름	소계
전체 표본		43.5%	7.0%	49.5%	100.0%
역할수행 정도	낮음	31.6%	5.3%	63.2%	100.0%
	보통	32.4%	11.8%	55.9%	100.0%
	높음	46.3%	7.4%	46.3%	100.0%
	매우 높음	49.4%	5.1%	45.6%	100.0%

5.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의 건강상태 및 일상 생활

구분	항목	본조사	D연구	비고
건강상태	(주관적 평가)	2.94 (0.68)	3.04 (0.74)	4점 척도: 평균(sd)
	① 전혀 건강하지 않다	1.1%	-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2.6%	-	
	③ 건강한 편이다	57.5%	-	
	④ 매우 건강하다	18.8%	-	
식사	규칙적 식사	55.9%	72.1%	'긍정' 응답자 비율

항목		본조사 표본	D연구 (학생표본)
평균 수면 시간(최근 7일)		6.72 (1.40)	7.25 (1.92)
	4시간 이하	5.4%	-
	5시간	13.4%	-
	6시간	24.7%	-
	7시간	26.3%	-
	8시간	22.0%	-
	9시간 이상	8.1%	-

D연구: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본 조사에 참여한 YC가 평가한 자신의 건강상태는 2.94로서 한국의 10대 청소년(학생) 표본의 평균(3.04)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본 조사에 참여한 YC의 76.3%('건강한 편이다' 57.5%, '매우 건강하다' 18.8%)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함
- YC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72로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선행연구 표본에서 산출된 7.25시간과 비교할 때, 30분 이상 적음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6.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이 경험한 어려움(종류)

- 이 표는 지난 한 해 동안 YC가 경험한 어려움을 정리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52.7%),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화·좌절감 경험(31.7%), 학교생활 어려움(29.6%), 외로움(25.3%), 가족 갈등(24.7%) 등의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음

항목	경험률(%)
경제적 어려움(돈이 없거나 부족함)	52.7%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화가 나거나 좌절감을 느낌	31.7%
학교생활(숙제, 공부, 선생님과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낌	29.6%
외로움을 느낌(또는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	25.3%
가족원과의 갈등	24.7%
친구와의 갈등 또는 친구관계의 어려움	23.7%
장애나 병이 있는 가족원을 수발하거나 돌봄	22.6%
갑작스러운 위기나 응급상황(예: 가족원이 사고를 당함)	19.9%
기타(양육비 소송, 친구의 사망 등)	18.8%
몸이 아파서 일주일 이상 평상시 하던 일들을 하지 못함	14.0%

7.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욕구

- 이 그림은 가족대상 서비스에 대한 YC의 욕구(최대 3개 선택)로서, '경제적 도움(현금이나 생필품 등)'을 희망하는 YC가 81.7%로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족의 여가·문화생활 지원'이 50.0%로서 2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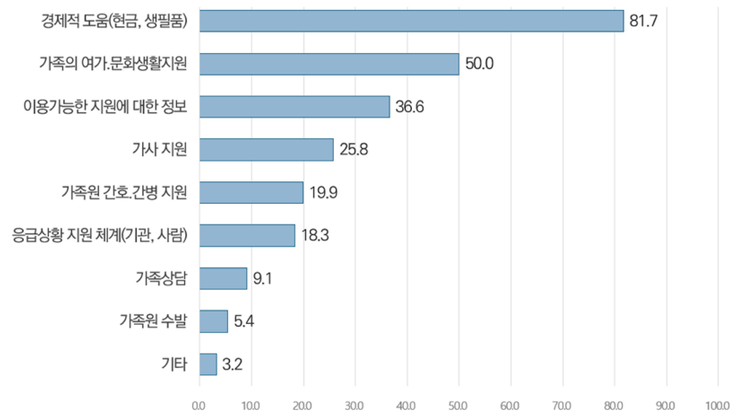

8. YC 자신에 대한 서비스 욕구

- 이 그림은 YC 자신에 대한 서비스 욕구로서(최대 3개 선택), '물품지원'(69.9%), '문화·체육활동 지원'(48.9%),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35.5%), '진로교육·진로상담'(34.4%)의 순으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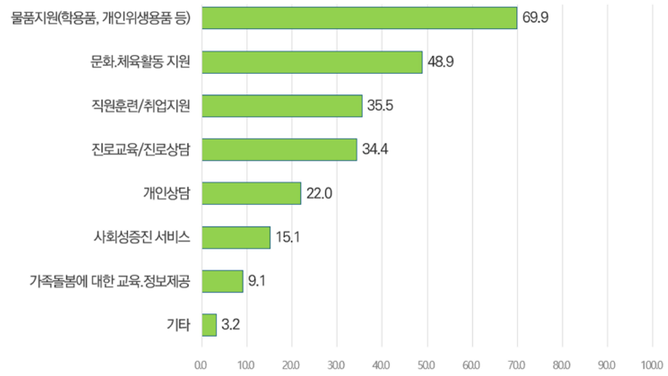

9.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유형 분석

구분	C연구 (n=8,854)	본 조사 표본			ANOVA 분석 결과 (Turkey HSD)
		유형1 (n=72)	유형2 (n=55)	유형3 (n=40)	
삶의 만족도[1]	6.90 (2.33)	7.19 (1.61)	5.95 (1.38)	3.53 (1.43)	F(2, 164)=173.189 p=.000 • 유형1>유형3*** • 유형2>유형3*** • 유형1>유형2***
자아존중감[2]	2.99 (0.86)	3.34 (0.53)	3.12 (0.45)	2.08 (0.60)	F(2, 164)=78.355, p=.000 • 유형1>유형3*** • 유형2>유형3*** • 유형1>유형2*
우울감[3]	1.94 (0.90)	1.49 (0.46)	2.79 (0.47)	3.17 (0.56)	F(2, 164)=189.327, p=.000 • 유형1>유형3*** • 유형2>유형3*** • 유형1>유형2***

C연구: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점수범위: 0~11(11점 척도 1개 문항으로 측정: 값이 클수록 높은 만족감을 의미)
2) 점수범위: 3~12(4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값이 클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의미)
3) 점수범위: 3~12(4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값이 클수록 높은 우울감을 의미)

- 3개 핵심 지표(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행하여 YC를 3개 집단으로 유형화
- 가족돌봄의 부담이라는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정신건강과 발달 차원에서 동일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유형1
  - 적응유연성이 높은 유형(HR)
  -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감은 낮음
- 유형2
  - 적응유연성이 보통인 유형(HR)
  -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감 모두 유형1과 유형3의 중간에 위치
- 유형3
  - 적응유연성이 낮은 유형
  -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감은 높음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10. 잠재적 보호요인 탐색

영역	잠재적 보호요인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감
가족관계	가족관계의 질	★★★	★★★	★★
	보호자의 긍정적 양육태도	★★★	★★★	★★★
건강 및 생활습관	신체적 건강	★★	★★★	-
	규칙적 식사	★	★	★★
	수면시간	★★★	★★★	★★
학교생활 및 적응	학업성적	★	★★★	-
	학교수업 적응	★★	★★★	★
	(긍정적) 교사관계	★★★	★★★	★★
	(긍정적) 또래관계	★★★	★★★	★★★
	학교생활 적응	★★★	★★★	★★★
사회적 지지	정서적 어려움 관련	★★	★★★	★★★
	응급상황 관련	-	-	★
	수발의 어려움관련	-	-	★★
	정보 관련	-	-	★

- 건강한 발달을 보이는 YC(예: 유형1)와 그렇지 않은 YC(예: 유형3)의 차이점이 무엇에 기인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YC에 대한 지원의 방향성과 구체적 지원 마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에, YC 유형1, 2, 3을 구별하는 요인이었던 3개 특성(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감)을 기준으로 잠재적 보호요인을 파악함(통계적 유의미성을 기준으로 중요성을 별표로 정리)
- 이 표에서 중요성이 확인된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은 해당 영역에서 YC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함의
- 분석관련 정보
  - 위계적 회귀분석
  - 통제변수 4개 투입(성별, 연령, 가족의 경제적 수준, 돌봄제공 기간)한 상태에서 각 요인의 유의미성 검증

11.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지원과 관련한 사례관리자의 인식 및 경험

- 사례관리자가 인식하는 YC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복수응답)으로 '아동이 자신을 가족돌봄아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이 64.3%로 가장 많았음
- 사례관리자가 인식하는 YC 발굴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중요 추진과제(복수응답)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이 69.1%로 가장 많았음
- 사례관리자가 인식하는 YC에게 꼭 필요한 지원(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69.6%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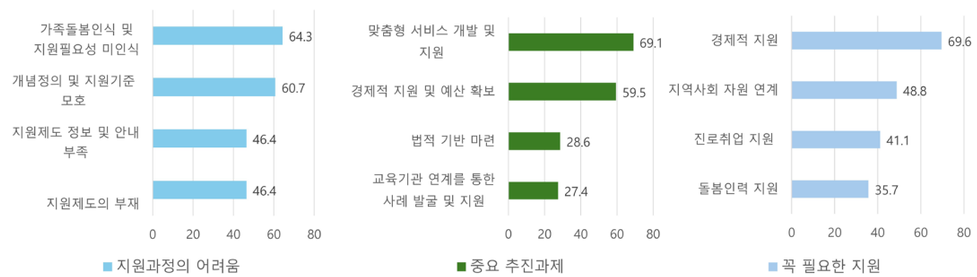

12.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인식 및 경험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사업 인지도는 45.2%로 절반 이하였으며, 사업을 모르는 비율은 54.8%였음
- 이 서비스를 알고 있는 사례관리자의 일상돌봄서비스 정보습득 경로(복수응답)는 온라인에서 우연히 접함(35.5%), 공공기관의 홍보포스터, 리플렛 등을 우연히 접함(32.9%),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 및 사업안내 문서 접수(25.0%) 순으로 집계됨
- 사례관리자의 일상돌봄서비스 신청해 본 비율은 18.4%였고, 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81.6%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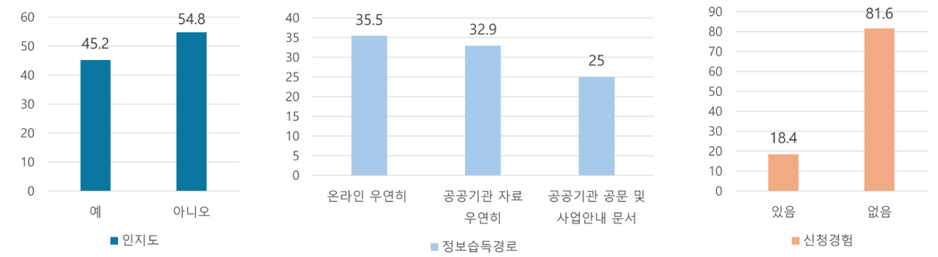

Ⅳ. 질적 연구의 주요 결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현장전문가 FGI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대상의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

- YC를 위한 독자적인 서비스의 부재: 현장에서는 취약계층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YC에게 연계하고 있음
- 실효성이 부족한 서비스: 단기간에 끝나거나 일회성 사업이 많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임
- 초기단계의 사업으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지만 전망은 밝음: 법과 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한 초기단계로 과거에는 없었던 지원책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음
- 지역간 차이
  - 농어산촌지역: 인프라와 자원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 매칭이 어려움
  - 대도시: 지원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지역 내 자원이 풍부하여 YC 발견 시 필요한 자원으로의 연계가 용이함

FGI 참여자의 진술

- 특별히 가족돌봄아동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는 사례는 없고...(공공영역사례관리사1)
- 제일 아쉬운 거는 저도 일시적인 지원이 많다는 거. 가족돌봄아동은 좀 장기적으로 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회복지사 1)
- 아이의 힘겨운 상황을 가정 내에서 해결하라고 정부나 지자체가 방치하지 않았다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정돌봄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사회복지사 3)
- 사실 가족돌봄아동들의 보호자는 아동의 멘토 매칭 지도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이 못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그런 가족돌봄아동 가정만이 갖고 있는 니즈를 충족하는 사회서비스가 관내에는 없어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 6)
- 발굴은 했으나 지원되지 못한 아이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으로라도 연계해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아이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요 (교육복지사 6).

현장전문가 FGI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에게 필요한 지원: (1)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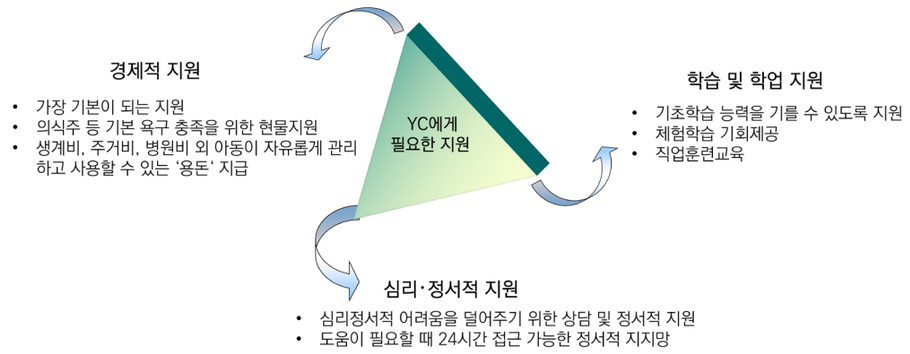

현장전문가 FGI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에게 필요한 지원: (2)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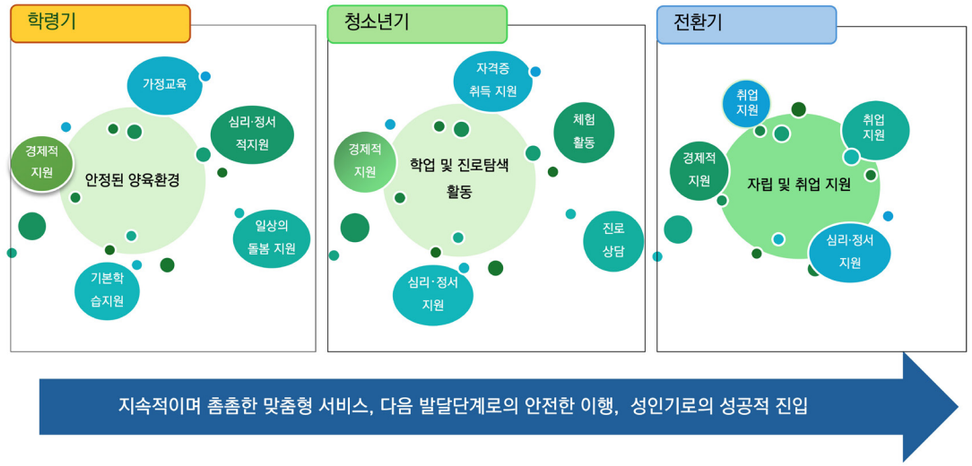

현장전문가 FGI

3.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취 및 개선의 필요성

- '영케어러의 돌봄 노동'이 당연시 되는 사회문화가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YC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특히, YC, 부모 및 보호자, 교육종사자(교사 및 학교장), 유관기관 종사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고취가 시급함

YC	• 자신이 YC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변의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 가족 돌봄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체념함 • 자신의 돌봄 역할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김
부모	• 개인(자녀)의 미래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부모의 가치관 • 부모가 YC의 고충과 어려움을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지 못함 • 아동 방임에 가까운 수준으로 과도한 돌봄행위를 강요하고, 외부지원을 거부하는 부모
교육종사자	• YC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함 • 아동을 가까이에서 관찰 할 수 있는 일선 교사들이 사례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YC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유관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	• YC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유관기관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 부족 •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발굴이 어려워지고, YC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 발생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현장전문가 FGI

4.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지원의 장애요인

- YC의 개인적 요인: 자신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거나, 서비스 거부, 지원 신청서 작성 및 동의서 제출에 대해 소극적임
- 부모 요인: 어린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 가족돌봄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고충보다는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부모,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
- 기관 요인: 기관(예, 학교)의 의사결정자의 무관심과 경직된 태도
- 제도적 요인: 공공영역에서 제시하는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

현장전문가 FGI

5.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현장실무자들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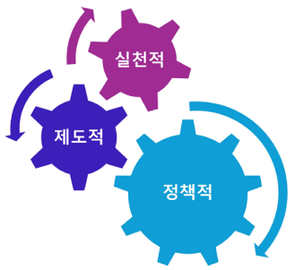

법적 근거 확보	• YC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YC 개념 정립	• 모호하게 느껴지는 YC 개념의 명확화 및 보급
교육비 지원 시스템 개선	•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비: 자동 지원 체계로 변경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 모든 초교에 교육복지사 배치로 YC 조기 발견 및 전문적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 전담(대표)기관, 부서, 인력 배치로 체계적 서비스 전달
YC 실태 조사	• 전국단위의 실태조사 실시 –〉 발굴, 상담,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 틀 마련
사회 인식 개선	• 사회 전반에 걸친 YC에 대한 인식 고취 및 개선

YC 심층인터뷰

6. 가족돌봄 상황을 둘러싼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의 감정과 태도

- 지치고 힘들어도 표현하기가 어려움
- 돌봄 상황을 수용하면서도 점점 커지는 양가감정
- 나의 삶을 뒤로 한 채 책임감과 의무로 가족을 돌봄
- 제대로 돌보지 못한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위로함

인터뷰 참여자의 진술

- 괜찮은 척 애써 담담한 척 좀 그런 척을 많이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힘들고 좀 도와달라'고 '손 좀 달라'고 막 그러고 싶은데…좀 도움 청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YC, 19, 여)
- 엄마를 돌보게 되면서 제 생활이 다 사라지고 이제 엄마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엄마께서 저 말고는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까 되게 부담감도 많이 들고 책임감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YC,19, 여)
- 20대의 절반이 가족 시다발이하다가 다 지나간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더 우울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로…(YC, 24, 여)
- 제대로 [간병]을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돌아가신]아빠한테 오히려 미안하죠(YC, 16, 남)
- 할아버지가 뇌진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너무 졸려가지고… [할아버지 혼자] 계단을 내려가시다가…[돌아가셨어요] 저는 행복하면 안될 거 같아요 (YC, 16, 남)
- "[지금은 힘들지만 이러한 경험이] 나중에 뭐 쓸모 있겠지 생각을,,,(YC, 18, 여)

YC 심층인터뷰

7.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의 서비스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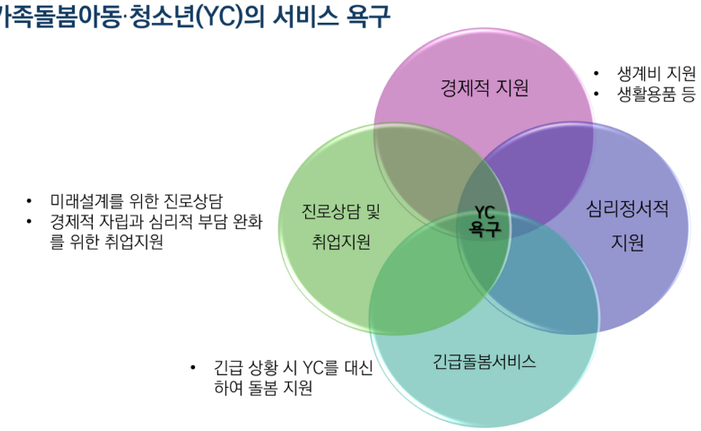

- 이외에도 YC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예, 권익 옹호, 가족원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 동행, 복지정보 안내 등)가 필요함을 언급함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YC 심층인터뷰

8. 가족돌봄이 아동·청소년(YC)에게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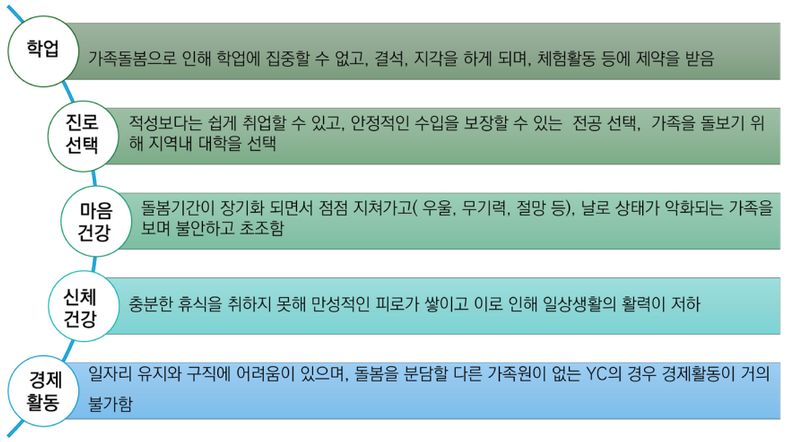

Ⅴ.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지원을 위한 추진 과제

1. YC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개선

- 취지 및 필요성
  - 일반 시민 뿐 아니라 YC와 그 가족원도 YC의 개념이나 권리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여 YC 발굴 및 지원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YC와 정부·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YC를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할 것이며, YC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은 자존감 향상 및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실행 방안
  - 각종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및 홍보
  - 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자 등 교육과 휴먼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훈련과 교육에 YC 관련 내용 포함
  - 학교에서 YC 인식 제고 및 개선 프로그램 운영(예: 학교의 정규 교과목에 일부 내용으로 포함)
  - YC 인식 제고 및 지원 관련 해외 모범 사례 도입 검토(예: 영국의 Young Carers Action Day)

- 설문조사에 참여한 YC의 과반이 자신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아니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으며, 일부 개별인터뷰 참여자도 자신을 'YC'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족의 시다발이,' '심부름꾼,' '소년가장' 등으로 표현함. 이를 통해 YC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YC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례관리자의 64.3%가 YC 지원과정에서 대상자가 가족돌봄 인식 및 지원 필요성을 미인식하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제시된 8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함
- FGI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영케어러의 돌봄 노동'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YC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함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실태파악을 위한 전국단위 조사 시행

- 취지 및 필요성
  - YC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신뢰할만한 정보(data)의 부족
  - YC의 규모, 생활현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실효성 높은 지원 방안 도출 가능
  - 조사를 통해 YC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증진이 기대됨
- 실행 방안
  - 인구주택총조사에 YC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문항을 포함 + 전국실태조사 추진
  - 국가승인통계의 하나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연구 수행 전제)

- 본 연구는 YC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정보 및 미흡한 현황 파악 문제를 타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의도하였으나, 본 연구는 공적 및 민간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체계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YC만을 조사함으로써, 서비스체계 외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YC의 규모나 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 민간영역에서 전국의 YC 인구 규모 및 이들의 생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기 때문에 국가승인통계의 하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인터뷰에 참여한 YC들은 이전에는 자신이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가족돌봄 역할을 체크하면서 자신이 YC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았다고 언급함. 이는 설문조사가 YC 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YC에 대한 국가의 대응 수준을 연구한 Leu et al.(2022)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가장 낮은 7단계의 '무대응' 국가로 분류됨. 이는 YC에 대한 체계적 연구 부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것과 관련이 깊음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3.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아동 연령대까지 포함한 명확한 개념 규정

- 취지 및 필요성
  - YC가 과도한 돌봄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됨
  - 정부·지자체의 규정(조례 등)에서 YC의 연령 및 개념 비일관적 & 불명확 → YC 발굴 및 지원에서의 혼선과 어려움
  - YC 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YC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보호의 전제조건
- 실행 방안
  - 법안에서 YC 개념을 청소년과 청년으로 한정하지 말고 아동 연령대까지 포괄하여 명확하게 규정
  - YC 보호와 지원의 핵심 사항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필수규정으로 명시

- 본 설문조사에서 15세 이하의 어린 아동의 가족돌봄수행16.92)은 MACA-18YC 척도의 '매우 높음(17점 이상)' 기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 집단(16-18세 집단 및 19-24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어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족돌봄역할 수행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특별히 더 과도하다고 할 수 있으며 YC 지원에 있어 어린 아동들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례관리자의 60.7%가 YC 개념 정의 및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 YC에 대한 국가의 대응 수준을 연구한 Leu et al.(2022)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가장 낮은 7단계의 '무대응' 국가로 분류됨. 이는 YC에 대한 체계적 연구 부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것과 관련이 깊음
-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에서 YC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YC 발굴 및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견을 찾기 어려웠음.

4.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체계 정비

- 취지 및 필요성
  - YC 사례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YC 발굴 및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사각지대에 있는 YC를 적극 발굴하여 즉각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사례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YC 규모,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성 강화 등을 위해 별도 기관을 지정하기보다 기존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 YC 발굴 및 서비스 연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밀착형의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성화가 요구됨
- 실행방안
  - 콘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기관 지정(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학교사회복지/교육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가능)
  - 명확한 책임성 부여: 기관 사업안내에 YC 사례관리 업무 추가
  - YC 욕구 사정(assessment)을 위해 사정평가도구 개발
  - YC 지원업무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민·관 YC 네트워크 활성화

- 본 설문조사에서 사례관리사에게 복수응답으로 추진과제와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48.8%)'가 두 번째로 중요한 추진과제로 꼽혔으며, 지원제도의 부족(46.4%) 또한 지원 시 주요 어려움이라고 보고됨
- FGI에서 현장전문가들은 YC 관련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YC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자원 연계가 어려웠다고 보고함.
- 많은 YC사례가 통합사례관리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되는데, 공공영역의 사례관리사들은 체계적인 발굴과 촘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부서, 인력 배치 등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이들은 행정비용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체계와 역할 분담을 재구성하거나 재배치함으로써 사례 발굴과 자원 연계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5.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지원을 위한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취지 및 필요성
  - 기존 소득 및 돌봄제도는 소득, 연령, 질병, 가구 등 대상기준의 한계가 있어 YC의 제도 이용이 제한됨
  - 현재의 제도 개선을 통한 YC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일상회복 지원 강화 필요
  - 일상돌봄서비스의 낮은 실효성 개선
- 실행방안
  -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는 소득 제한 폐지 및 이용료 차등 지급방식으로 개편
  - 간호·간병통합지원서비스의 대상을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로 확대 필요
  - 돌봄서비스 자격을 노인, 만성질환, 장애로 제한하지 않고, 전 연령대의 단기 돌봄 필요자까지 포함하도록 기준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건강관리 등 주요 돌봄제도에 YC 발굴 및 자원연계 항목 추가
  -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대상에 전 연령대의 YC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확대하며 바우처 형식으로 운영하여 제도의 분절성 감소 도모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YC를 위한 지원 추가 등)

- 사례관리사 및 YC 대상 인터뷰에서 대상 기준으로 인해 YC의 가족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예를 들어, 보호자의 알코올의존으로 인한 동생 돌봄, 수술 등 만성질환이 아닌 질환 등의 경우에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호소하였음
- 사례관리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절반 이하(45.2%)였으며, 이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4%에 불과한 것에 기초할 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6.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 발굴과 지원을 위한 학교 내 복지 강화

- 취지 및 필요성
  - 학교는 YC 조기 발견 및 개인의 상황과 욕구(needs)를 파악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라 할 수 있음
  - 특히 교육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복합적 어려움과 욕구를 가진 YC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정신건강 문제
    - 대인관계 문제(교사와의 관계, 또래 관계)
    - 자원부족 (→ 장학금 추천, 지역사회자원 연계)
    - 진로 및 복지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 현재 교육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율은 저조한 상태(경남 4.8%~부산 23.4%)로, 개선이 요청됨
- 실행 방안
  -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근거와 인력 배치 명문화
  - 학교기반사례관리를 통한 YC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FGI 결과에 따르면, 교육복지사들은 YC를 발굴하여 이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과 수행하고 있었음(예, 심리지원,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자원 연계, YC분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 YC 권익향상을 위한 옹호 등)
- 개별 인터뷰에 참여한 일부 YC는 학교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함. 한 연구참여자는 "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도움이 되지만,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늘 바쁘셔서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고 언급하며, 학교 내 복지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교사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적응의 4개 하위차원 모두 YC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감과 깊이 관련한 잠재적 보호요인으로 확인됨. 이는 YC가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될 경우 YC가 가진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함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7. 돌봄부담 완화 및 경제적 지원을 YC 지원의 기본항목으로 설정

- 취지 및 필요성
  - 본 조사 참여 YC의 가족돌봄은 절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국제비교에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확인됨
  - YC가 자신의 신체·정신건강 증진, 자아실현, 미래 준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들의 돌봄부담이 우선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에 참여한 YC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전방위적으로 평가됨. 실제로 YC의 서비스 욕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경제적 지원이었음
- 실행 방안
  - 가족돌봄부담 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YC 지원의 기본 항목으로 설정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YC에 대한 자원 개발 및 연계 강화 (지원인력의 서비스 매뉴얼에 포함 & 강조)

- MACA-18YC로 측정된 본 조사 참여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역할 수행 평균값(16.92)은 '매우 높음(17점 이상)'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수준일 뿐 아니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유럽의 그 어떤 국가 보다 YC의 돌봄역할수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본 설문조사에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YC는 전체의 약 75%였으며, YC 또는 가족에게 직·간접적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현금성 지원, 물품 지원 등)을 했다고 보고한 사례관리자는 70~75%대로 나타나, 서비스 제공 여부만을 고려할 때 욕구-지원 간 불균형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본 조사에서 YC의 과반이 지난 한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보고에 기초할 때, 경제적 지원의 충분성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사에 참여한 YC들이 가족 및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현금이나 생필품 등 경제적인 도움(72.1%), 학용품, 개인위생용품 등 물품지원(69.9%)을 높은 비율로 희망한 것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시적, 부정기적 지원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8. YC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방안: (1) 마음건강을 위한 개입 및 지원

- 취지 및 필요성
  - 과도한 가족돌봄 → YC 일상생활 및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 → 정신건강 차원 부정적 결과(스트레스, 우울 등)
  - 마음건강을 위한 개입 및 지원은 YC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는 물론 YC의 자기 돌봄(self-care) 능력 및 스트레스 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실행 방안
  - YC가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채널 다양화
  - 정기적 및 장기적 상담기회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 YC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기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지원인력의 서비스 매뉴얼에 포함), 정기적 보수 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
  - 예방차원에서 학교, 복지관 등에서 멘토링,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YC에게 정서적 지지와 휴식 기회 제공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YC의 약 1/3이 좌절감, 외로움 등 마음건강과 관련한 이슈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에 해당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YC 중 22%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개인상담을 선택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정서적 어려움 관련 사회적 지지는 낮은 우울감과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잠재적 보호요인으로 확인됨
- 개별인터뷰에 참여한 상당수의 YC들은 지속되는 돌봄 책임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들 중 일부는 심한 우울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8. YC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방안: (2) 진로지도

- 취지 및 필요성
  - YC는 가족 돌봄으로 학업과 진로 탐색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잠재력 개발이 제한되고 미래의 직업 선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진로지도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얻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며,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임
  -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 계획, 실행은 미래에 대한 YC의 불안감을 줄이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실행 방안
  - 체계적인 진로지도, 직업체험 및 경력개발 기회 제공(지원인력의 서비스 매뉴얼에 포함)
  - YC의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YC의 돌봄역할을 대체하는 서비스 필요(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체험학습비 지원 등)

- 설문조사에 참여한 YC의 1/3 이상이 진로교육·진로상담을 희망하였는데, 특히 고등학교 재학시기인 16-18세 YC의 욕구가 높았음(43.8%)
- FGI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YC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진로 지도와 취업 지원을 강조함. 이들은 진로지도를 통해 YC들이 자신감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 기회를 탐색하며, 장기적인 경력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YC들의 정신적·정서적 안정 유지에도 진로지도 및 상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함.
- 개별 인터뷰 결과, 다수의 YC가 적성이나 관심보다는 가족 돌봄, 경제적 이유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음. 구체적인 사례로 한 연구참여자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포기하고, 지역 대학을 선택함

8. YC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방안: (3) 문화·체육활동 지원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

- 취지 및 필요성
  - 여가· 문화· 체육활동에 대한 YC의 욕구가 높았으며, 이는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일관적
  - 가족갈등을 경험하는 YC가 적지 않았으며, 가족갈등을 경험한 YC는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드러냄에 따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여가· 문화· 체육활동은 아동·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일관된 보고임
- 실행 방안
  - 사례관리자가 YC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관계를 사정평가하고 필요 시 관계 향상을 위해 개입(지원인력의 서비스 매뉴얼에 포함)
  - 단기 또는 1회성의 가족 캠프나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활동에 가족관계 요소를 포함하여 진행

- 본 설문조사에서 YC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결과,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가족대상 서비스 욕구 및 YC 개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 두 차원모두에서 문화·체육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약 50%로 경제적 지원에 이어 2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은 높은 욕구는 YC유형,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였음.
- YC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지원은 압도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70% 초반대), YC가 높은 비율로 희망하는 '문화·체육활동 지원 및 연계'는 10%대에 머물러 있어 괴리를 보임.
- 본조사에 참여한 YC의 24.7%가 가족원과의 갈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음. 또한 본 조사에서 가족관계의 질과 보호자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YC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과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등 가족의 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의 중요성이 확인됨.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8. YC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방안: (4)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 취지 및 필요성
  - 가족돌봄 관련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YC가 정작 자신의 건강 관리에는 소홀함
  - 불충분한 수면과 불규칙적 식사 등 부적절한 생활양식 →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악영향
  - YC의 평소 생활습관을 가까이에서 바로 잡아줄 성인 가족원의 부재
- 실행 방안
  - YC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YC 생활에 대한 세밀관 관찰과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YC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해야 함(지원인력의 서비스 매뉴얼에 포함)

- 본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답한 YC는 ¼에 육박하며 전체 표본의 평균 역시 건강함을 의미하는 3점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YC의 신체적 건강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본 조사에 참여한 YC의 생활에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이 관찰됨. 대표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한 YC들은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을 대표하는 선행연구 표본 보다 수면시간이 30분 이상 부족하였으며, 규칙적 식사를 하는 비율은 16.2%p나 낮은 것(55.9% vs. 72.1%)으로 확인됨. 그러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부모/조부모 모두 부재한 가정의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에 YC의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성인 가족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본 조사에서 신체적 건강, 규칙적 식사, 그리고 수면시간은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향상 및 우울감 감소에 유의미한 연관된 잠재적 보호요인으로 확인됨.

9. 가족돌봄아동·청소년(YC)의 정보 접근성 강화

- 취지 및 필요성
  - YC는 신청주의 기반 전달체계에서 스스로 신청을 하지 못해 정책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가 낮고 개인의 정보 탐색 및 활용 역량이 높지 않을 경우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
  - 아동의 접근성이 높은 학교 기반으로 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
- 실행방안
  - 초등·중·고등 학교를 통한 YC 정보 제공 체계 마련 및 실행(YC 리플렛, 포스터, 가정통신문 등의 배포, YC 정보 상담 등)
  - 복지로 내 YC 온라인 플랫폼 구축(YC의 개념, YC의 서비스 정보, YC의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등의 기능 탑재)
  - AI 기반 채팅방 운영
  - 복지멤버십 등록 확대로 신청주의의 한계 보완(2021년 9월 도입된 복지멤버십 가입, 2023년 기준 1,109만명 가입)
  - 관련 정보 제공 시, 아동친화적 언어 사용 및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제한적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 본 조사에 참여한 YC의 36.6%는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나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욕구는 더 높아졌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YC의 과반이 자신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여, YC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나타남
- 사례관리사 및 YC 대상 인터뷰에서 가족돌봄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자원이 존재하나 가족돌봄아동이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영국, 호주 등 외국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용자들이 서비스 필요 시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중요함

종합토론

좌장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토론

강수진 가족돌봄청년

이성은 인천가현중학교 교육복지사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정습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

장영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장

종합토론

토론1

강수진

가족돌봄청년

초록우산

종합토론

“아동에게 가족돌봄의 의무를 떠넘기지 않는 사회”

강수진
가족돌봄청년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청년기인 현재까지 엄마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입니다. 또한 저의 돌봄경험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존재에 대하여 알리고,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초록우산과 함께 에세이작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은 어른과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가정의 문제로 인해 역으로 돌봄을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바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가족의 문제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잘한다, 효자다. 너 때문에 산다’고 칭찬하며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슬픈 생각도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담도가 기형으로 태어나는 유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이혼을 하고 혼자 가장의 역할을 하던 중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에 패혈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 엄마는 간과 심장에 여러 질병을 갖게 되었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엄마의 보호자로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학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상태는 나빠지기만 했고 유일한 해결책은 간 이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약없는 기다림의 끝에 저는 장기기증이 가능한 만16세가 되었고 이식수술을 통해 엄마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부모가정이며 기초수급자였기에 감사하게도 복지관 선생님께서 많은 지원사업을 안내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렸던 저는 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했기에 쉽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네가 있어서 엄마가 산다' 라는 말과 함께 엄마의 목숨이라는 엄청난 짐을 저에게 감당하게 했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야 할 때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중에도 조퇴를 해야만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결석하는 학생을 위한 인정결석은 없었기에 간병을 위한 결석은 무단으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픈 엄마를 돌봐왔기에 병원비와 학업을 걱정하는 것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나빠질지 모를 엄마의 상태는 제 모든 일상에 긴장감과 피로감을 주었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을 때 병원에서는 제게 '성인 보호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외삼촌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밤새 엄마를 간호했지만 이 힘든 돌봄의 상황에 누군가를 끌여들였다는 생각에 더 힘들어졌고, 점점 저는 제 어려움을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교를 결석하고 복지관 선생님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충당했지만, 돌봄의 현장에 있는 것은 교복을 입고 있는 저 한 명 뿐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후 엄마는 많이 회복하셨지만 오랜기간 투병생활을 하셨기에 후유증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돌봄을 병행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하게됐습니다. 제가 다닐 대학은 학교생활과 엄마의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여야만 했습니다.

원하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는 편이 저에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었지만 엄마를 혼자 집에 둔 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있었지만 이유모를 불안과 부담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엄마를 돌보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제 자신이었습니다. 엄마를 돌보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고, 돌봄에 깊에 종속되어버린 제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시간 엄마를 돌봐왔기에 독립된 한 명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도 생각해본적 없는 돌봄 이후의 삶에 새로운 기대가 생기기도 했지만 돌봄을 하지 않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끝을 알 수 없는 가족돌봄이라는 암울한 상황속에서 역으로 돌봄을 제공하면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미숙하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문제가 있는지도, 도움을 청해야하는 상황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효' 라는 사상이 깊게 뿌리내린 우리 사회에서는 더더욱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기 보다 사회가 찾아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사업과 연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이 건강한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지원 서비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면,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말고 우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수입으로 인하여 각종 수급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아닌 심리·정서 지원은 우선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맞춤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 내용 중 생계비, 주거비, 병원비 외에 아동이 자유롭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한 고등학생 친구는 자기돌봄 지원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몰라서 고민이라며, 스스로에게 필요한 돈을 지출하는 일조차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보호대상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진행된다는 경제교육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정책 마련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대신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이런 모습들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조금씩 인식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토론2

이성은

인천가현중학교 교육복지사

초록우산

종합토론

교육복지현장 내 가족돌봄아동 발굴, 지원경험과 한계

이성은
인천가현중학교 교육복지사

저는 학교에서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 지원의 역할을 하고있는 교육복지사입니다. 교육복지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학생들이 포함되어있는데요. 매년 5월이면 업무포털 나이스를 통해서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의 명단을 받게 됩니다. 이 명단을 중심으로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에 대해 담임교사와 위클래스 교사 등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향과 사업들을 논의하고 사안에 따라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교육복지사의 업무입니다.

먼저, 발표자께서 제안해주신 정책과제 중 학교에서 가족돌봄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가 가족돌봄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돌봄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복지사로서 가족돌봄아동들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복지현장이 느끼는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생활과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가족돌봄아동은 우연한 기회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지원했던 아동은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위클래스교사 모두 아동의 가족돌봄 상황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동이 친구들에게 아버지의 항암수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교육복지사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아동이 수술 후 입원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고, 집안 일과 식사를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육복지사가 학생들의 위와같은 가정 상황을 모두 알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제가 담당해야하는 교육복지 대상 학생만 145명입니다. 여기에 특수학생과 다문화 학생, 위기학생까지 포함된다면 2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는, 하루에 한 명씩 상담을 진행해도 연간 최대 2회가 불가능한 수치인데요. 즉, 교육복지사가 교내의 모든 학생을 일일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이고, 학생들이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직접 찾아와서 설명하거나, 우연히 발견되지 않는 이상 교육복지사가 미리 상황을 파악해 지원하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저와 같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복지현장에서 가족돌봄아동을 포함해 취약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면밀히 살피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4년 7월 기준, 전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시행되는 학교는 34.2%에 불과하고, 사회복지사업인력은 16.9%에 불과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을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장소이고, 가족돌봄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동시에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력확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국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 시행교 및 인력비율〉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전체 학교	사업 시행교	지정 비율	전체 학교	사업 시행교	지정 비율	전체 학교	사업 시행교	지정 비율	전체 학교	사업 시행교	지정 비율
사회복지사업 시행 학교	6,302	2,380	38.5	3,305	1,488	43.2	2,421	451	11.1	12,028	4,319	34.2
사회복지사업 수행 인력	6,302	1,060	18.5	3,305	741	23.5	2,421	96	4.0	12,028	1,897	16.9

출처: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두 번째는, 전달체계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육복지사가 교육복지대상 학생에 관하여 알게되는 정보는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외에 다른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ADHD나 기타 병력이 있는지, 가족구성원 중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지 등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기에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복지사가 개별 아동을 모두 살피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인력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아동에 대한 심도있는 상담,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기타 행정적인 사유, 각 지원주체(행정복지센터, 구청, 교육청, 교육복지센터 등)가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문제 등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게하는 장애요인이 됩니다. 교육복지사가 힘써서 하루에 1명씩 정보를 공유받는다고 하더라도 200명이라고 하면 200일이 걸립니다. 그마저도 정보제공이 필요한 만큼 위중한 사안이여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행정적인 절차와 각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현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교육복지대상 아동의 오빠가 가족돌봄을 하다가 한계와 분노를 느껴 급기야 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행정복지센터, 구청, 정신보건 센터 등의 기관이 모여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자해를 시도했고, 모의 알콜 및 이혼 등의 문제로 가족 전체가 이전에 사례관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당시 사례관리가 진행되었음에도, 그 (자해를 시도했던)동생이 중학교에 진학해 교육복지대상이 되었을 때, 위와 같은 가정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각각의 지원 주체가 위와 같은 정보들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었다면, 가족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지원을 연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기록에만 의존해 많은 복지대상을 세심히 살피기 어려웠던 점과 분절적인 행정적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의 관리는 가족돌봄아동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대상 학생의 전반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교육복지현장에서도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초록우산 등 여러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이제야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족돌봄아동 자신조차도 그 인식이 부족한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발굴, 지원해 나갈 수 있을지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지원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토론3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의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는 양적·질적 방법론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돌봄의 부담과 심리정서사회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핵심적인 쟁점을 제시하고 주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몇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규정의 확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의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며 합의된 정의 부재한 상황. 2022년 복지부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의 대상연령은 13~34세이나 12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을 포함한 가족돌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4.7.31.)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서 아동과 청년의 특성이 매우 다르며 이를 가족돌봄의 특성에 따라 별도법을 발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아울러 돌봄의 부담이 정상적인 생활과 삶에 부담이 될 때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보편적인 돌봄에 대한 지원은 돌봄기본법(가칭) 등을 통해 사회적 지원의 틀이 마련되어져야 함.
- 이러한 토대위에서 생애주기별 발달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아동 및 청소년, 청년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돌봄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전달체계의 대상으로 가족돌봄의 욕구 및 필요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한계

- 국가차원의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가족돌봄청년지원대책 (2022.2), 신취약청년전담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청년정책의 차원에서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이 정책이슈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2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신규추진된 일상돌봄서비스는 청소년으로 연령이 확장되기는 했으나 13~39세의 연령제한을 가짐.
- 돌봄필요자와 돌봄제공자의 연령에 대한 구분을 둔 기준 및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돌봄연령의 하한과 상한 확대 또는 연령 제한의 폐지 검토할 필요

구분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19~64세	13~39세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가구기준	없 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출처: 보건복지부. (2024).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본 연구발표 자료 “13.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인식 및 경험”에서 조사에 참여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사례관리자가 응답한 낮은 일상돌봄서비스 신청경험비율(18.4%)은 이러한 제도의 연령제한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을 위한 전국적인 실태조사

-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존재여부에 대한 문항 포함 및 전국실태조사 추진 관련해서 대상연령을 아동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 질환 등에 의한 돌봄필요자, 가족돌봄제공자에 대한 문항으로 확대하여 돌봄제공자의 연령을 파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원은 동거가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구성원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추정의 한계가 존재함. 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결과(함선유 외, 2022)는 13~18세 가족돌봄청년 중 부모와 비동거 비율이 15.7%로 나타남.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체계의 정비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가족돌봄제공자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경제적인 지원, 돌봄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욕구(교육, 학습, 자립, 심리정서적 지원, 긴급지원 등)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보편적인 돌봄서비스와 경제적인 지원은 보편적인 돌봄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지원은 기존의 아동청소년 복지전달체계 및 학교의 교육복지체계를 통해서 발굴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교육환경에서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에 대한 정책제안에 동의하며, 나아가 최근 교육부 및 교육청 단위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제도와 지자체의 취약아동 · 청소년 지원체계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즉, 단위학교에서 발굴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학생맞춤형통합위원회를 통해 지자체의 드림스타트, 아동보호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연계하고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초록우산

종합토론

토론4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초록우산

종합토론

“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제도 수립의 원칙과 방향 ”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팀 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다. 한국사회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과 관련한 현안과 8가지의 정책 과제에 대한 이견은 없다. 해당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실, 그리고 입법을 근거로 정책을 시행할 정부부처의 행정가들이 주목해봐야 할 주요 주제들이 집약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한다.

2024년 9월 기준 2024년 9월 기준 8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명에 아동,청소년,청년들이 각각의 조합으로 명기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예시를 보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가 해당된다. 연령별 규정도 상이한데, 0-18세, 0-24세, 0-34세, 0-39세, 9-24세, 9-34세, 19-45세 등으로 상당히 포괄적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 기본계획 수립, 발굴 및 실태 조사, 지원사업, 가족돌봄수당, 중복지급 제한 등이 포함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1건의 법률안이 현재 발의를 앞두고 있다. 발의안은 모두 정책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을 모두 포함하여 34세 이하인 자를 규정하고 있다.

제안해 주신 정책과제에서 부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원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것이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기특한 시선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영 케어러들이 처한 삶의 여건은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도 버겁다. 따라서 영 케어러가 특히 아동·청소년의 연령일 때에는 지원 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제안해 주신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영 케어러의 돌봄활동을 지속시키는 것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도 있다. 영국의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은 돌봄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목욕시키기, 용변처리하기, 이동시키기와 같이 상당한 물리력을 필요로 하는 일, 가족 생계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 과도한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일이 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족돌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가족돌봄의 부담을 덜어내고 아동·청소년으로서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청소년 개인의 시간과 기회를 온전히 희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지원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 원칙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즉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소위 ‘맞춤형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일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평가팀이 해당 가족 및 청소년의 상황을 ‘평가’한 이후, 그 가족 또는 해당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제문의 개선과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을 근거로 한 지원 제도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거나, 맞춤형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신청주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의 방식보다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돌봄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현황조사 및 평가에 근거하여, 사례관리 아동·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제와 같이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 여건 및 다른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평가를 적용할 경우 다음의 여건 등을 반영하는 시행령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친부모와 분리되어 조부모를 부양·돌보는 청소년·청년이 친부모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부모의 재산 등이 소득평가에 반영되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혼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한부모를 돌보는 경우, 다른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입증되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등 업무 지침에서 소득평가 시 ‘본인 및 돌봄 대상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가족에 해당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의 범주는 또 다른 문제와 연동되는데, 돌봄대상가족은 통상적으로 「민법」상 가족, 즉 직계혈족, 즉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를 돌봄 대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비친족 가구의 가구구성원이 100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혈연에 의한 가족을 돌보는 자만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해 점차적인 논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는 영 케어러의 규모를 추산하는데 있어서 ‘친구’를 돌보는 영 케어러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고려할 때 ‘가족과도 가까운 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검토해 볼 일이다.

영 케어러가 겪는 어려움 조사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29.6%,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23.7%로 가족돌봄이 학업 및 학우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자신에 대한 서비스 욕구에서도 학용품 등 물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9%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또래 친구들 당연히 누리는 보살핌과 돌봄에서 소외되어 있고, 결국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영국 조사에서 영 케어러들은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될 우려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 케어러의 68%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들은 가족의 질병 내지는 장애가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돌봄책임과 괴롭힘은 이들의 잦은 결석의 이유가 된다.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이들이 무업상태(NEET)에 있는 비율은 또래 집단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았다. 또한, 영케어러의 29%가 돌봄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는 조사도 있는데 이는 또래 집단의 학업중단률의 4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 케어러가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학교내 복지 강화 뿐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영 케어러의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영 케어러의 성별 특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호주에서는 여성청소년이 영 케어러인 경우가 76.9%, 남성청소년인 경우가 19.4%로 그 차이가 상당하였다. 연령별 지원 제도의 세분화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서비스 욕구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 케어러의 연령을 초등학교 이하로 확대하고 이들을 적기에 발굴하기 위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스웨덴의 「보건의료보장법」(Health and Medical Care Act)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신건강, 장애, 심각한 신체적 상해, 알코올 및 기타 약물중독 관련 환자들의 아이들(children as next of kin)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약 3~4백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정신건강 또는 알코올 및 약물중독 문제가 있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진단 하에, 이들을 취약 가족으로 규정하고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 케어러의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호주의 Wellways 활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가족, 친구, 이웃이든지 여부, 소득수준의 여부와 상관없이 Wellways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영 케어러는 4~24세의 연령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드렸던 바와 같이 Wellways는 보다 많은 케어러를 발굴하기 위해 병원과 협력하고 있었다. 지역에 있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기관 활동을 홍보하고 지원 서비스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한다. 간호사, 의사, 일반 행정직 모두가 홍보 대상이고 이들이 환자들을 Wellways에 연결해주고 있다. 지역내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다. 지역에서의 상호간 연결을 통해, 어느 누구라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 케어러 발굴의 가장 좋은 경로이자 지향해야 할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 공동체가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초록우산

종합토론

토론5

안정습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

초록우산

초록우산

MEMO

초록우산

종합토론

토론6

장영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장

초록우산

초록우산

MEMO